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약관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 (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 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 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 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 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 (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 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 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 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 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 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 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청약서 부본)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

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 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 4. 보험가입금액
 - 5. 계약자
 - 6.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 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 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 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경)

-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퇴직 등으로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은 후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보험계약의 성립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을 준용합니다.
- ② 회사는 새로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변경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변경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때로부터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 수한 때로부터 새로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보 장을 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 새로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보험기 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에 의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변경시에는 사망 당시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책임준비금(이하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변경의 신청 및 승낙에 있어서는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 내지 제4항, 제23조 (계약전 알릴의무),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26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7조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 단체(보험대상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며, 이 경우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되고 보험료를 납입중인 때에는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다만, 단체에서 보험 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단체에서 부담한 보험료부 분까지도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계약자가 제6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경)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 자)를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② 제4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 (계약의 소멸)

- ①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

다. 다만 제6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경)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제10조 (보험나이)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 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 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 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2.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 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 가 증명하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해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보 장하여 드립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을 통하여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

- 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 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 동대출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

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14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회 보험 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제 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6조(사기에 의 한 계약)을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 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제16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 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 : 재해사망보험금
- 2. 2종(만기환급형)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경우
 - : 만기환급금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 ② 제9조(계약의 소멸) 제1항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제6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경)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변경 된 경우 최종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⑥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 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 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 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1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 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4) 이 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5)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 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 다.
-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제1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 살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고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 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20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

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으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3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3조(계약 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

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상 지났을때

-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 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 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

다.

- ⑤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5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7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 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합니다.

제29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30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에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1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포함)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 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 인의 확인서 등)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2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

-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4(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 항의 보험금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6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3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 정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지급 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 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4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릅니다.

-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5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 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으며,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 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계약자의 권리행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철회권),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항, 제2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2항, 제28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제31조(보험금 등청구시 구비서류), 제35조(보험계약대출)의 권리를 행사할 수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 하지 아니합니다.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체작의 보험안내 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 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책임을 집니다.

제42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립니다.

제*43*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보험금지급기준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재해사망 보험금 (약관 제17조 제1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 하였을 경우	5,000 만원
		○ (1형) 50%환급형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50%
만기환급금 (약관 제1 7 조	2종(만기환급형)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	○ (2형) 70%환급형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70%
제2호) 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 을 경우		○ (3형) 90%환급형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90%
		○ (4형) 100%환급형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 1) "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 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를 말한다.
- 3) "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 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2. 신체부위

"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를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10
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5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 5) "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 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 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45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 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당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10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 래 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 여 결정한다.
- 2) "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 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기본형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 9) "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 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 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 $\mathrm{cm}(1/2$ 크기는 40 cm^2 , 1/4 크기는 20 cm^2), $6 \sim 11$ 세의 경우는 6×8 $\mathrm{cm}(1/2$ 크기는 24 cm^2 , 1/4 크기는 12 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6 $\mathrm{cm}(1/2$ 크기는 12 cm^2 , 1/4 크기는 6 cm^2)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나. 장해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 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해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 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 제1, 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 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 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 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두 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 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 는 경우
-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한 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

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 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 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장해의 분류	지급를
3) 한 팔의 3 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20 10 5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 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라) "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	=
-----------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20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10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5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J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 이 "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 1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를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10
(1손가락 마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3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10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5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 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 (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다 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 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 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5	
(1발가락 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20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8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3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 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 1) "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 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 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흥·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	흉·복부 남긴 때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75
2)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50
3)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20
3)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20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 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를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10~ 100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70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 ① "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로 한다.

2) 정신행동

- ① 상기 정신행동 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 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 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 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 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୬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 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ሁ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 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되지 않는다.
- (8)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 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 ① "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 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 ① "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 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서,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를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를
목욕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수 없는 상태(10%)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 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 가능한 상태(3%)

(별표 4)

보험금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32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재해사망보험금 (제17조 제1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만기 환급금 (제17조 제2호)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 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 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보험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 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 환급금 (제20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 부터 해지환급금 청-	: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해자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 날: 까지의 기간	부터 해자환급금 지급일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2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책임준비금(이하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 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 3. 특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2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

-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 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 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 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

- 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 재해장해연금
- 2.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 중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 재해장해급여금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 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 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 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 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

- 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 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 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 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①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 ⑨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 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 미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그 재해전에 이미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9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 받은 것으로 간주한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 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2. 위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및 장해 급여금 또는 장해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①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②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재해장해연금 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정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①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 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 다.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 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 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12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 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 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 지 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6조(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 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재해장해연금 (약관 제9조 제1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 태가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 회에 한함)	매년 100만원 ×20년
재해장해 급여금 (약관 제9조 제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각 장해지급률 중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3)

장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4)

보험금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5조 제2항 관련)

=	·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재해장해급여금 초히 작해역근 등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제2회 이후의 재해 장해 연금 (제9조 제1호)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 일 이전 에 지급 할 사유와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 지지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 지지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에 지급 글 제ㅠ되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 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미선이내 : 예정이율의 50% 미년 첫 과기가: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 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지 환급금 (제12조 제1항)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 성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해지환급금 청구 지의 기간	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 지의 기간	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보험계약 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소멸시효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휴일재해보장특약 약관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휴일재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 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 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책임준비금(이하 "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 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

- 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 의 경우
- 3. 특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2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 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 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3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 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 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 휴일"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합니다.
- ② 다만, 보험사고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 사고 발생지의 "토요일", "일요일" 및 "사고 발생지의 법률에 의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휴일"로 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 휴일재해사망보험금
- 2.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중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 휴일재해장해급여금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 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 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 ②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따릅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 를 말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⑦ 제1항 및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⑧ 제1항 및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 ①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0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 받은 것으로 간주한 장해급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 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장해
 - 2. 위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및 장해급여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장해
- ②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 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

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답합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 우에는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를 해친 경우
 -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13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 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재해를 증명하는 서류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 함)
 -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 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 지 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7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 정을 따릅니다

보험금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휴일재해 사망보험금 (약관 제10조 제1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휴일재해 장해급여금 (약관 제10조 제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 중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이 특약에서 "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3)

장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4)

보험금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6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급이자
Ⅰ 흐익새해상해급(1) 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지 환급금	· · ·		
(제13조 제1항)	해지환급금 청구을 기간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 기간	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소멸시효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교통재해보장특약 약관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교통재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 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 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책임준비금(이하 "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 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 3. 특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2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

-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 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 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 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 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 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사망하였을 경우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2.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 중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 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 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 ②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 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

- 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 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 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 를 말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⑦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 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 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 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⑧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 ①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 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0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 받은 것으로 간주한 장해급여금을 빼고지급합니다.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 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 던 장해
 - 2. 위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 되지 않았던 장해
- ⑫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 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 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교 통재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
 - 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 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 12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 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교통재해를 증명하는 서류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 함)
 -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 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

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 보험금 지 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6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 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0:12	371867 1,000 C C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약관 제9조 제1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경 우	1,000만원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약관 제9조 제2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중 3%이상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재해분류표"와 동일

교통재해분류표

-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 (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 하고 있지 아니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 (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화물로 인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타 및 에스컬레이터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 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 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 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4)

장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5)

보험금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5조 제2항 관련)

	보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교통	대해사망보험금 대해장해급여금 제1호 내지 제2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 환급금		ト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제12조 1항)	해지환급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l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 -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 까지의 기간	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출퇴근야간교통재해보장특약 약관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출퇴근야간교통재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 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 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책임준비금(이하 "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 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

- 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 3. 특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2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 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 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3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 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출퇴근 및 야간 시간"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출퇴근 및 야간시간"이라 함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를 말하며, 이 경우 시간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간을 말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출퇴근 및 야간 시간에 발생한 교통재해분류 표(별표3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출퇴근야간교통재해사망보험금(별표1 " 보험금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 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 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 ②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 를 말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⑦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 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 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 ①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 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 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 험자 (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당합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출 퇴근야간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는 출퇴근야간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 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 13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 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교통재해를 증명하는 서류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 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7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 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출퇴근야간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약관 제10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퇴근 및 야간시간에 발생한 교통재 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만원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출퇴근 및 야간시간"이라 함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를 말 하며, 이 경우 시간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간을 말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재해분류표"와 동일

교통재해분류표

-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 (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 하고 있지 아니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 (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화물로 인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타 및 에스컬레이터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 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 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 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4)

장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5)

보험금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6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재 해 시	연안교통 - 망보험금 - 10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 환급금 (제13조 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 까지의 기간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까지의 기간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재해치료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주 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하였을 경우
 - 3.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 ③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 3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 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합니 다.

제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정합니다.
 - 가.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
 - 나.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종피 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 ② 이 특약의 체결시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 ' 가'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 ' 나'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주계약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에 해당되 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 ⑤ 제1항 제2호 ' 가'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 ⑥ 제1항 제2호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체 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 이 경우
- 3. 특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 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3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 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 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 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 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 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 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 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 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7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항의 규정 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 통원"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가 "특정상병분류표 "(별표 3참조)에서 정한 특정상병(이하 " 특정상병" 이라 합니다)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병원에 입실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재해(별표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받는경우를 말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특정상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 : 특정상병통원비 지급 (통원 1회당, 1일 1회에 한함)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 (별표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 해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골 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 골절치료급여금(치아파절 제외)
- 3.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분류표 (별표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 술을 받았을 때

: 재해수술급여금(수술1회당)

제13조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5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이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재해발생 1회당 1회의 골절치료급여금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 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 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 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5 참조)에 장해 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5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⑦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 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 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 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5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5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5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장해분류표(별표5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5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 액 부담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게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15*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 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골절진단서, 수술진단서, 통원확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 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

- 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8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영업일]

- " 토요일", " 일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6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9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특정상병 통원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특정상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특정상병을 직접적인 원인 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 1회당 1만원 (다만, 1일 1회에 한함)
골절치료 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골절(치아파절 제외)이 발생하 였을 경우	골절발생 1 회당 20 만원
재해수술 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1회당 100만원

-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5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 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골절치료급여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가지 이상의 골절상 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재해발생 1회당 1회의 골절치료급여금만 지급 합니다.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제외)	S02 S02.5는 제외
2.	목의 골절	S12
3.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5.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6.	아래팔의 골절	S52
7.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8.	대퇴골의 골절	S72
9.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0	.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1	. 여러 신체부위의 골절	T02
12	.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T08
13	.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T10
14	.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T12
15	.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T14.2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3)

특정상병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상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중	
1. 콜레라	A00
2.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A01
3. 기타 살모넬라 감염	A02
4. 시겔라증	A03
5.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NEC	A05
6. 페스트	A20
7. 디프테리아	A36
8. 발진티푸스	A75
9. 황열	A95
10. 아마	B03
질병 이환 및 사망의 외인	V01~ Y98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 T98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4)

재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5)

장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6)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8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급이자
특정상병통원비 등 (제12조 제1호 내지 제3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 환급금 (제15조 제1항)		h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해지환급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 까지의 기간	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재해수술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재해수술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재해수술특약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주 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하였을 경우
 - 3.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 ③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 3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 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합니 다.

제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정합니다.
 - 가.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
 - 나.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종피 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 ② 이 특약의 체결시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 ' 가'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 ' 나'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주계약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에 해당되 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 ⑤ 제1항 제2호 ' 가'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 ⑥ 제1항 제2호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체 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 이 경우
- 3. 특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때에는 제14조(해지환급금)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 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해지환급금)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3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 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 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 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 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 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 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 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 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7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항의 규정 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의하여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재해수술급여금(별표1 "보험금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 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

- 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제1항의「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 해를 말합니다.
- ⑤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 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만을 적용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 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 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 합니다.
- ⑦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제7항에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 액 부담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게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14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 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 또는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에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수술진단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 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 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영업일]

- " 토요일", " 일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8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재해수술 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 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 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 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 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장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7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급이자
재해수술급여금 (제11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 환급금 (제14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 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 지의 기간	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재해입원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재해입원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재해입원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 였을 경우
- ③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3 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 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 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가.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 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
 - 나.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종피보 험자(확장 보험대상자)
- ② 이 특약의 체결시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의 ' 가'목 중 배우자의 경우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또는 제1항 제2호 ' 나'목에서 정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 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의 ' 가'목 중 배우자의 경우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계 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⑤ 제1항 제2호의 '가'목 중 배우자의 경우 제3항에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 ⑥ 제1항 제2호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 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3.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거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

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 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4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 정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 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과 동일합니다.

제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4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 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7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의 규정을 따 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기준)하여 의사의 관리하에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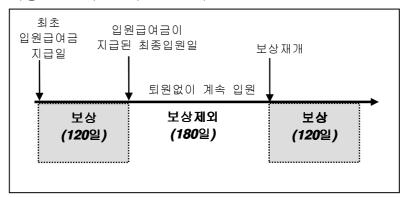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별표 4 "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재해입원급여금(별표1 "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0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재해로 인하여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

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입원급여 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④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 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거 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⑦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계속 입원이란 중도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 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 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① 제9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① 제1항의「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5) 제14항에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비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답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 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14*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 은 이 특약의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입·퇴원확인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및 계약자가 보험 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 보험금 지급시 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영업일]

" 토요일", " 일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8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 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재해 입원급여금 (제11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 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 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장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7조 제2항 관련)

1. 재해입원급여금 (제11조)

적 립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2. 해지환급금 (제14조 제1항)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 년 이내	예정이율 의 50%	
	1 년 초과 기간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	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입원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입원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입원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 였을 경우
- ③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3 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 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

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 니다.

- 2. 종피형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가.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 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
 - 나.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종피보 험자(확장 보험대상자)
- ② 이 특약의 체결시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의 ' 가'목 중 배우자의 경우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또는 제1항 제2호 ' 나'목에서 정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 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의 ' 가'목 중 배우자의 경우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계 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⑤ 제1항 제2호의 ' 가'목 중 배우자의 경우 제3항에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 ⑥ 제1항 제2호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 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 3. 특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거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 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4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 정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 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과 동일합니다.

제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4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 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7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의 규정을 따 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기준)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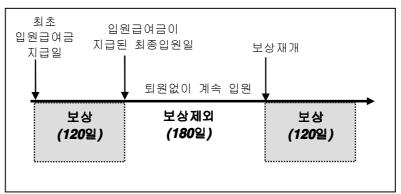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별표 4 "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질병재해입원급여금(별표1 "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0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질병(또는 재해)으로

-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 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입원급여 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④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입원급여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거 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⑦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계속 입원이란 중도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 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① 제9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약화된 때에는 그 약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① 제1항의「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5) 제14항에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비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당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 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14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 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입·퇴원확인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및 계약자가 보험 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 " 보험금 지 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영업일]

" 토요일", " 일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8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병재해 입원급여금 (제11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 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 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질병 및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 및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 ②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경우
- ④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질병 및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 및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4)

재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5)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7조 제2항 관련)

1. 질병재해입원급여금 (제11조)

적 립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2. 해지환급금 (제14조 제1항)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의 50%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	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일반사망특약 약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일반사망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일반사망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하였을 경우

제2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특약 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1)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해지환급금)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1)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금급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제2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까지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1)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 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과 동일합니

제 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 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2조(해지환급 금)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 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 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3)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별표1 '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특약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3)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 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4)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 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5) 제1항의 경우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8)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
- (6) 제 18의 영구 영애지급할이 재해될 모든 필정의 전단적 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9) 제8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10)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

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1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다만,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12*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

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합니다.

(2)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정한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1)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 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보험금 또는 계약 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영업일]

- " 토요일", " 일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2)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율계산"과 같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6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1)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2)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재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2)

장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5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일반사망보험금 (제9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헤피흾그그	해지환급금 지급 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 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예정이율의50% 1년초과기간 :1%
해지환급금 (제12조 제1항)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암입원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암입원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암입원특약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주계약", 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 였을 경우
- ③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3 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 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정합니다.
 - 가.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
 - 나.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종피보 험자(확장 보험대상자)
- ② 이 특약의 체결시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 ⑤ 제1항 제2호 ' 가'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3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 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 3. 특약 체결시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7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 일의 전일 이전에 제10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 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 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3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 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 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10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1항에서 정한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하 "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그 날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

된 경우로서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7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조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 암"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1조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기

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2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중 별표5 [제자리의 신생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 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별표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4조 ("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갑 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5조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 기준)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 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 암입원비 지급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 기타피부암입원비 지급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 이후에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 제자리암입원비 지급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 이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 경계성종양입원비 지급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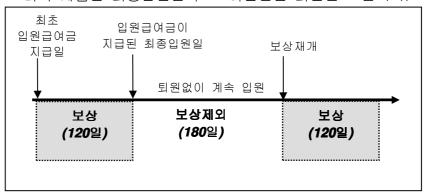
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갑상선암입원비 지급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④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암, 동일한 기타피부암, 동일한 제자리암, 동일한 경계성종양 또는 동일한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3항을 적용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 동일한 기타피부암, 동일

한 제자리암, 동일한 경계성종양 또는 동일한 갑상선암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⑥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원기간 중 보험기간이 끝 났을 때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3항을 적 용하여 계속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① 제6항에서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하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8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암(또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 <u>⑨</u>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 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① 제10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①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 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

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⑩ 제1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 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 다.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

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 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19*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 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0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1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입·퇴원확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및 계약자가 보험 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2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영업일]

" 토요일", " 일요일", "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 근로자의 날"을 제 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7 "보험 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2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고영가입금액 1,000만원) 지 급 금 액
암 입원비 (제16조 제1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기타피부암 입원비 (제16조 제2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제자리암 입원비 (제16조 제3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경계성종양 입원비 (제16조 제4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이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갑상선암 입원비 (제16조 제5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 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드립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재해분류표"와 동일

장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장해분류표"와 동일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열성을 일입니다. 대상악성신생물(암)	분 류 번 호
내 경 국 경 연 경 돌 (참 <i>)</i>	표 큐 건 오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 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 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 C41
5.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 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 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 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 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 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 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 C96
16.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8.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대 상 악 성 신 생 물 <i>(</i> 암 <i>)</i>	분 류 번 호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 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 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D47 (D47.1,D47.3
	<i>D47.4,D47.5</i> 제외)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 (D47.3), 골수 섬유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D47.5)은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표 7)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22조 제2항 관련)

1. 입원비 (제16조 제1호 내지 제5호)

적 립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2. 해지환급금 (제19조 제1항)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 년 이내	예정이율의 50%	
	1 년 초과 기간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남성건강치료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남성건강치료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남성건강치료특약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 였을 경우
- ③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3 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 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정합니다.
 - 가.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
 - 나.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종피보 험자(확장 보험대상자)
- ② 이 특약의 체결시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주계약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에 해당되지

-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 (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3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 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 3. 특약 체결시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 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 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3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 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 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7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

-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7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 8대특정질병" 및 "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 8대특정질병" 이라 함은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특정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의 장애, 결핵 및 폐렴, 신부전증 중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4 " 8대 특정질병 분류표" 참조)
 - 1. "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허혈성심질환, 폐성심장질환 및 폐 순환의 질환, 기타형태 심장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 합니다. 또한 "심장질환"중 급성심근경색증(急性心筋 梗塞症)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허헐성심장 질환중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분류번 호 121~123)을 말합니다.
 - 2. "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 분류에 있어서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 니다. 또한 " 뇌혈관질환" 중 " 뇌출혈"이라 함은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질환중에서 지주막하

-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분류되는 질병(분류번호 160~162)을 말합니다.
- 3. " 간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 에 있어서 바이러스 간염, 간의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4. "특정만성호흡기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 기관지염, 상 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천식지속상태로 분류되 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 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 다.
- 6. " 갑상선의 장애"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 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장애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7. " 결핵"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결핵, 결핵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8. " 폐렴"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폐렴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9. " 신부전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 류에 있어서 신부전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8대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

한 진단에 의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2대질병"이라 함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하며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 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 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④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되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⑤ 급성심근경색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심장효소검사,핵의학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5대장기의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법 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제12조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 1. "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 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2. "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 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여하

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4. "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 가 있는 제대혈(배꼽의 탯줄의 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 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제13조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8 대특정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 기준)하여 의사의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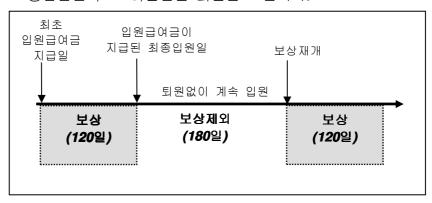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 이후에 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 2대질병치료비 지급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 2대질병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 이후에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 : 5대장기이식수술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 함)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 이후에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 함)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 이후에 8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 8대특정질병입원비 지급
 - ※ 8대특정질병 :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특정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의 장애, 결핵 및 폐렴, 신부전증

제1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2 "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 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후에 2대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2대질병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④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⑤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8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8대특정질병에 의한 입원이라 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 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

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⑦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원기간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4항을 적용하여 계속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⑧ 제7항에서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하며, 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⑨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8대특정질병 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 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① 제11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 를 말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5)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1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 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 다.
-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제1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17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 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제1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입·퇴원확인서, 수술증 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 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0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영업일]

- " 토요일", " 일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6 "보 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21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2대질병 치료비 (제14조 제1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2 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 급) ※ 2대질병 : 뇌출혈 또는 급성심 근경색증	1,000만원 (다만, 가입 후 1년 미 만 진단확정시 50% 감액 지급)
5대장기이식 수술비 (제14조 제2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5 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다 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	500만원 (다만, 가입 후 1년 미 만 수술시 50% 감액 지급)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제14조 제3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조 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	500만원 (다만, 가입 후 1년 미 만 수술시 50% 감액 지급)
8대특정질병 입원비 (제14조 제4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8 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 원하였을 경우 ※ 8대특정질병 :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특정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의 장애, 결핵 및 폐렴, 신부전증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 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 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장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4)

8대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8대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 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	
1. 심장 침범이 없는 류마티스열	100
2.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l01
3. 류마티스무도병	102
4. 류마티스승모판질환	105
5. 류마티스대동맥판질환	106
6. 류마티스삼첨판질환	107
7. 다발성 판막 질환	108
8. 기타 류마티스 심장질환	109
9. 협심증	l20
10. 급성 심근경색증	l21
11. 이차성 심근경색증	122
12.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l23
13.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l24
14. 만성 허혈성 심장병	l25
15. 폐색전증	l26
16. 기타 폐성 심장질환	l27
17. 기타 폐혈관질환	l28
18. 급성 심낭염	l30
19. 기타 심낭의 질환	l31

분류항목	분류번호
2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낭염	l32
21.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133
22.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l34
23.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l35
24. 비류마티스성 삼첨판 장애	I36
25. 폐동맥판장애	l37
26.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138
2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 판막장애	139
28. 급성 심근염	I40
2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l41
30. 심근병증	142
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32 .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144
33. 기타 전도장애	l45
34. 심장정지	I46
35. 발작성 빈맥	147
36. 심방 세동 및 조동	I48
37. 기타 심장부정맥	I49
38. 심부전	150
39.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l51
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152
뇌혈관 질환	
41. 지주막하출혈	160
42. 뇌내출혈	l61
4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l62
 44. 뇌경색증	163

	분류항목	분류번호
4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164
4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l65
4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l66
48.	기타 뇌혈관 질환	l67
4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168
5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9
간질혼		
51.	급성 A형 간염	B15
52.	급성 B형 간염	B16
53.	기타 급성 바이러스간염	B17
54.	만성 바이러스간염	B18
55.	상세불명의 바이러스간염	B19
56.	알코올성 간질환	K70
57.	독성 간질환	K71
5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부전	K72
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	K73
60.	간의 섬유증 및 경화증	K74
61.	기타 염증성 간질환	K75
62.	간의 기타 질환	K76
6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 장애	K77
특정민	·성호흡기질환	
64.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65.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 기관지염	J41
66.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2
67.	천식	J45
68.	천식지속 상태	J46

분류항목	분류번호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69. 위궤양	K25
70. 십이지장궤양	K26
71.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
갑상선의 장애	
72. 선천성 요오드결핍증후군	E00
73. 요오드결핍과 관련된 갑상선장애 및 동류의 병태	E01
74. 준임상적인 요오드결핍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2
75.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	E03
76. 기타 비중독성 고이터	E04
77.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E05
78. 갑상선염	E06
79. 갑상선의 기타 장애	E07
폐렴 및 결핵	
80.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A15
81.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A10
결핵	A16
82. 신경계통의 결핵	A17
83. 기타 기관의 결핵	A18
84. 좁쌀 결핵	A19
85. 결핵의 후유증	B90
8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J12
87.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	J13
88.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폐렴	J15
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분류항목	분류번호
9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92.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신부전증	
93. 급성 신부전	N17
94. 만성 신장질환	N18
95. 상세불명의 신부전	N19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5)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뇌출혈	
1. 지주막하 출혈	l60
2. 뇌내출혈	l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급성심근경색증	
4. 급성 심근경색증	l21
5. 이차성 심근경색증	122
6.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123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6)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20조 제2항 관련)

1.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제14조 제1호 내지 제4호)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2. 해지환급금 (제17조 제1항)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 년 이내	예정이율의 50%
	1 년 초과 기간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기율 + 1%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	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여성건강치료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여성건강치료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여성건강치료특약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 였을 경우
- ③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3 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 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정합니다.
 - 가.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
 - 나.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종피보 험자(확장 보험대상자)
- ② 이 특약의 체결시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주계약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에 해당되지

-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 (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3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 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 3. 특약 체결시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 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 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3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 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 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

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8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자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

- 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7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8대특정질병" 및 "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 8대특정질병" 이라 함은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특정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의 장애, 결핵 및 폐렴, 신부전증 중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4 " 8대 특정질병 분류표" 참조)
 - 1. "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 허혈성심질환, 폐성심장질환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태 심장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심장질환"중 급성심근경색증(急性心筋梗塞症)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허헐성심장질환중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분류번호 121~123)을 말합니다.
 - 2. "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 분류에 있어서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 니다. 또한 " 뇌혈관질환" 중 " 뇌출혈"이라 함은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질환중에서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분류되 는 질병(분류번호 160~162)을 말합니다.

- 3. " 간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 에 있어서 바이러스 간염, 간의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4. "특정만성호흡기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 기관지염, 상 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천식지속상태로 분류되 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 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 다.
- 6. " 갑상선의 장애"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 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장애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7. " 결핵"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결핵, 결핵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8. " 폐렴"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폐렴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9. " 신부전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 류에 있어서 신부전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8대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에 의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 2대질병"이라 함은 " 뇌출혈" 또는

- "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하며 " 뇌출혈" 또는 " 급성심근 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 뇌 출혈" 또는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④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되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⑤ 급성심근경색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심장효소검사,핵의학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수 있습니다.

제11조 ("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5대장기의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법 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제12조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 1. "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 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2. "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4. "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 가 있는 제대혈(배꼽의 탯줄의 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 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제13조 ("부인과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부인과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별표6 [부인과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부인과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에 의합니다.

제14조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8 대특정질병 또는 부인과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 기준)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 이후에 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 2대질병치료비 지급 (다만, 각각 최초 1에 한하여 지급) ※ 2대질병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 이후에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 : 5대장기이식수술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 함)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 이후에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 함)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 이후에 8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 8대특정질병입원비 지급
 - ※ 8대특정질병 :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특정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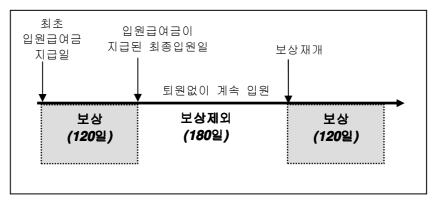
갑상선의 장애, 결핵 및 폐렴, 신부전증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 이후에 부인과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 부인과질환입원비 지급

제1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후에 2대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2대질병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④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 로 합니다.
- (5)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8대특정질병 또는 동일한 부인과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8대특정질병 또는 동일한 부인과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⑦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원기간 중 보험기간이 끝 났을 때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4항을 적 용하여 계속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⑧ 제7항에서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하며, 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⑨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8 대특정질병(또는 부인과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 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1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 를 말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5)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1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18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 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0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입·퇴원확인서, 수술증 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 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1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

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영업일]

- " 토요일", " 일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7 " 보 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22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2대질병 치료비 (제15조 제1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2 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 급) ※ 2대질병 : 뇌출혈 또는 급성심 근경색증	1,000만원 (다만, 가입 후 1년 미만 진단확정시 50% 감액 지급)
5대장기이식 수술비 (제15조 제2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5 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다 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	500만원 (다만, 가입 후 1년 미만 수술시 50% 감액 지급)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제15조 제3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 우 (다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 함)	500만원 (다만, 가입 후 1 년 미만 수술시 50% 감액 지급)
8대특정질병 입원비 (제15조 제4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8 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 원하였을 경우 ※ 8대특정질병 :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특정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의 장애, 결핵 및 폐렴, 신부전증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부인과질환 입원비 (제15조 제5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부인과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 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 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 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장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4)

8대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8대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 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	
1. 심장 침범이 없는 류마티스열	100
2.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l01
3. 류마티스무도병	102
4. 류마티스승모판질환	105
5. 류마티스대동맥판질환	106
6. 류마티스삼첨판질환	107
7. 다발성 판막 질환	108
8. 기타 류마티스 심장질환	109
9. 협심증	l20
10. 급성 심근경색증	l21
11. 이차성 심근경색증	l22
12.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l23
13.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l24
14. 만성 허혈성 심장병	l25
15. 폐색전증	l26
16. 기타 폐성 심장질환	127
17. 기타 폐혈관질환	l28
18. 급성 심낭염	l30
19. 기타 심낭의 질환	l31
2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낭염	132

분류항목	분류번호
21.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133
22.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l34
23.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l35
24. 비류마티스성 삼첨판 장애	l36
25. 폐동맥판장애	l37
26.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138
2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 판막장애	139
28. 급성 심근염	I40
2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l41
30. 심근병증	l42
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32.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144
33. 기타 전도장애	I45
34. 심장정지	I46
35. 발작성 빈맥	l47
36. 심방 세동 및 조동	I48
37. 기타 심장부정맥	I49
38. 심부전	I50
39.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1
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152
뇌혈관 질환	
41. 지주막하출혈	160
42. 뇌내출혈	l61
4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4. 뇌경색증	l63
4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l64
4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l65

	분류항목	분류번호
4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l66
48.	기타 뇌혈관 질환	l67
4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168
5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l69
간질혼		
51.	급성 A 형 간염	B15
52.	급성 B형 간염	B16
53.	기타 급성 바이러스간염	B17
54.	만성 바이러스간염	B18
55.	상세불명의 바이러스간염	B19
56.	알코올성 간질환	K70
57.	독성 간질환	K71
5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부전	K72
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	K73
60.	간의 섬유증 및 경화증	K74
61.	기타 염증성 간질환	K75
62.	간의 기타 질환	K76
6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 장애	K77
특정민	선호흡기질환	
64.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65.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 기관지염	J41
66.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2
67.	천식	J45
68.	천식지속 상태	J46
위궤임	및 십이지장 궤양	
69.	위궤양	K25
70.	십이지장궤양	K26

분류항목	분류번호
71.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
갑상선의 장애	
72. 선천성 요오드결핍증후군	E00
73. 요오드결핍과 관련된 갑상선장애 및 동류의 병태	E01
74. 준임상적인 요오드결핍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2
75.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	E03
76. 기타 비중독성 고이터	E04
77.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E05
<i>78.</i>	E06
<i>79.</i> 갑상선의 기타 장애	E07
폐렴 및 결핵	
80.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A15
81.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A16
82. 신경계통의 결핵	A17
83. 기타 기관의 결핵	A18
84. 좁쌀 결핵	A19
85. 결핵의 후유증	B90
8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J12
87.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	J13
88.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폐렴	J15
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9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92.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신부전증	

분류항목	분류번호
93. 급성 신부전	N17
94. 만성 신장질환	N18
95. 상세불명의 신부전	N19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5)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뇌출혈	
1. 지주막하 출혈	160
2. 뇌내출혈	l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급성심근경색증	
4. 급성 심근경색증	l21
5. 이차성 심근경색증	122
6.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123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6)

부인과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부인과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유방의 장애	
1. 양성 유방 형성이상	N60
2. 유방의 염증성 장애	N61
3. 유방의 비대	N62
4.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N63
5. 유방의 기타 장애	N64
여성 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	
6. 난관염 및 난소염	N70
7.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N71
8.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N72
9. 기타 여성 골반염증성 질환	N73
1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 골반 염증성 장애	N74
11. 바르톨린샘의 질환	N75
12.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N76
1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외음질의 궤양 및 염증	N77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14. 자궁내막증	N80
15. 여성 생식기 탈출	N81
16. 여성 생식기를 포함한 누공	N82
17. 난소, 난관 및 넓은 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N83
18. 여성 생식관의 폴립	N84

	분류항목	분류번호
19.	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85
20.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N86
21.	자궁경부의 이형성	N87
22.	자궁경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88
23.	질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89
24.	외음부 및 회음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90
25.	무월경, 소량 및 희발 월경	N91
26.	과다, 빈발 및 불규칙 월경	N92
27.	기타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N93
	여성 생식기관 및 월경주기와 관련된 통증 및 기타 병 태	N94
29.	폐경기 및 기타 폐경기전후 장해	N95
비뇨실	식계통의 기타 장애	
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	N99
양성신	생물	
31.	입 및 인두의 양성 신생물	D10
32.	주침샘의 양성 신생물	D11
33.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D12
34.	기타 및 부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 신생물	D13
35.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D14
36.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양성 신생물	D15
37.	뼈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D16
38.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D17
39.	모든 부위의 혈관종 및 림프관종	D18
	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D19
41.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D20
42.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1

분류항목	분류번호
43. 멜라닌세포모반	D22
44. 피부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3
45. 유방의 양성 신생물	D24
46. 자궁의 평활근종	D25
47.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6
48.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7
4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 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8
50. 남성 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9
51.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	D30
52. 눈 및 눈부속기의 양성 신생물	D31
53.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2
54. 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5.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물	D37
56.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 상의 신생물	D38
57.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9
58.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9.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0.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1.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물	D43
62.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분류항목	분류번호
	D47
63.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	(D47.1, D47.3,
타 신생물	D47.4, D47.5
	제외)
	D48
64.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 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 으로 합니다.
- ※ 습관 유산자(N96), 여성불임(N97), 인공수정과 관련된 합병증(N98)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만성 골수성 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D47.3), 골수 섬유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D47.5)은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 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표 7)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21조 제2항 관련)

1.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제15조 제1호 내지 제5호)

적 립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2. 해지환급금 (제18조 제1항)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 년 이내	예정이율의 50%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 년 초과 기간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교보암진단특약(갱신형)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교보암진단특약(갱신형)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교보암진단특약(갱신형)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 였을 경우
 - 3.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 ③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3 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

- 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 ⑤ 이 특약을 주계약 체결시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 이라 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제7조(특약 의 갱신)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 니다.

제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정합니다.
 - 가.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 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등
 - 나.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종피보 험자(확장 보험대상자)
- ② 이 특약의 체결시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

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 (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3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

- 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 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 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 3. 특약 체결시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8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5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 일의 전일 이전에 제11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 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

- 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 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3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부터 제7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종료일까지가 3년(갱신시 보험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갱신)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갱신 전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아니합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8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80 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 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예외)
- 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및 갱신시의 예정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 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 다.
- ⑤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8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 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 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계약을 준용합니다.
- ⑤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전 계약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그러나 제1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로 하며,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 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 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특약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하며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 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 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 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제12조 ("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 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유방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유 방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 C80(이차성 및 상 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 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기 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4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중 별표3 [제자리의 신생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 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5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 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 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6조 ("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 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갑 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 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 암 진단보험금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 에 한함)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 이후에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 이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 에 한함)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 갑상선암진단보험금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제1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암 진단보험금, 제2호의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제3호의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제4호의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또는 제5호의 갑상선암 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갱신계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 성종양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7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질병(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또는 재발한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제1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20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 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1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2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 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3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

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영업일]

- " 토요일", " 일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 " 보 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24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암 진단보험금 (제17조 제1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 우 (다만, 최초 1회의 진 단확정에 한함)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50% 감액 지급) ※유방암의 경우 최초계약의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암보장개시일 이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진단확정시 상기금액의 10%지급(다만, 여성에 한함)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제17조 제2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었 을 경우 (다만, 최초 1회 의 진단확정에 한함)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50% 감액 지급)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제17조 제3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 리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50% 감액 지급)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제17조 제4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 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 을 경우 (다만, 최초 1회 의 진단확정에 한함)	3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50% 감액 지급)

급부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제17조 제5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 선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50% 감액 지급)

-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 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 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갱신계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질병(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또는 재발한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 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암)	분 류 번 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 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 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 C41
5.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 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 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 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 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 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 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 C96
16.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8.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 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 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D47 (<u>D47.1,D47.3</u> <u>D47.4,D47.5제외)</u>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 (D47.3), 골수 섬유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D47.5)은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표 5)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23조 제2항 관련)

1. 진단보험금 (제17조 제1호 내지 제5호)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2. 해지환급금 (제20조 제1항)

적 립 기 간		지급이자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 년 이내	예정이율의 50%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	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교보신산업재해사망특약 약관

무배당 교보신산업재해사망특약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 (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거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별계약으 로 전환하는 경우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하였을 경우
- 3.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제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을 2인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 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주 된 보험대상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 자)]로 합니다.

제3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 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 의 경우
- 3. 특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퇴직,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로부터 탈퇴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탈퇴년월일 및 사유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3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 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7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 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 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 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 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이하 " 업무상의 재 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전액을 산재사망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2 "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 재해"라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업무 상의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보 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업무상의 재해일부터 2년 이내,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업무상의 재해일부 터 1년 이내에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제9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보 장을 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

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에서「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 해를 말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별표1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 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 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 용합니다.
- ⑦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써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에는 산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로써 업무상의 재해에 의한 자살일 경우 산재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를 해친 경우
 -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게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12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 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3*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에 정한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산업재해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보험금 지급 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장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2)

재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6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산재사망보험금 (제9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12조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 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 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교보신산업재해장해특약 약관

무배당 교보신산업재해장해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 (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 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거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별계약으 로 전환하는 경우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7항에서 정한 산 재장해급여금의 총한도까지 지급이 완료되어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제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을 2인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다.

제3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 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체 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특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 3. 특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

- 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퇴직,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로부터 탈퇴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탈퇴년월일 및 사유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3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

- 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7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 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 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 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이하 " 업무상의 재 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 급 내지 제1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산재장해급여금을 지급합 니다.

•	
장해등급	지 급 액
1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2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90%
3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80%
4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70%
5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60%
6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7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45%
8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40%
9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5%
10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 %
11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5%
12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2 "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 재해"라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업무상의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업무상의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업무상 의 재해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업무상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결정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합니 다.
- ⑤ 제4항에 규정한 산재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업무 상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산재장해급여금을 드 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산재장해급여금을 지급받 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

- 에 해당하는 산재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산재장해급 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 ⑥ 제4항에 있어서 그 업무상의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한 장 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산재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 에 발생한 장해로 산재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산재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⑦ 산재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로 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⑨ 제8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① 제1항에서「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 해를 말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별표1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 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 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 용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 다.
- ③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1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5)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 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 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12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 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3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정한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산업재해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보험금 지급 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장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2)

재해분류표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주계약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신 체 장 해		
제 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 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 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등급	신 체 장 해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 5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 6 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등급	신 체 장 해	
제 7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 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걸도 자해가 남은 사라 	
제 8급	75. 산페공의 항상이 제 1상 · 제2상 모든 제3상이런지 상지에 함페기상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등급	신 체 장 해
제10급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촉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착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한쪽 말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말의 검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착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등급	신 체 장 해			
	12.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 12급				

등급	신 체 장 해	
I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제 13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한쪽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제 14급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참고〉

-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 거나 중수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별표 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6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산재장해 급여금 (제 9 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 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제12조제1항)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 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 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 2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 (承諾)으로 부가되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 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 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 3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 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 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 증명서 등)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포함)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5 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제 6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 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관 기타사항

제 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